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4318

제안연월일: 2024. 9.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 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.

건 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	전체회의 상정일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	1076	소병훈의원	2024. 6.27.	2024. 8.20.
	2073	이수진의원	2024. 7.22.	2024. 8.20.

- 나.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7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(2024. 8. 23.)에서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- 다. 제417회국회(임시회)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(2024. 8. 26.) 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 - ※ 제417회국회(임시회)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(2024. 8. 26.) 비용 추계 생략 의결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신설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6조의2(정당한 편의제공의무) ①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(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제공하거나 서류발급, 주문·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)를설치·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)에 설치되는 응 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·무선 정보통신을 노인 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 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 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6조의2(정당한 편의제공의무) ① 재화・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(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 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 발급, 주문・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)를 설치・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・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유・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노인 아닌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・이용할수 있도록하는데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

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